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19가합100132(본소), 2019가합108174(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황구현

피고(반소원고)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황, 허현, 최지완

변론 종결2024. 3. 15.

판결 선고2024. 6.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7,657,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4. 6.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82,89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2024. 6.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2,980,5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11,240,8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5. 서울 송파구 F 일원 G 블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착공일 2016. 11. 20., 준공일 2018. 3. 30.,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첨부된 '건설공사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계약조건

9. 대금지급방법

- (1) 선금금 10%
- (2) 골조완료 시 15%
- (3) 수·배전관 발전기·분전반 입고 시 30%
- (4) 주차관제 및 케이블트레이, 통신소방장비 입고 시 20%
- (5) 사용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25% 전액 지급

10. 특약사항

- (1) 건축허가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3. 16.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9. 3. 위 공사기간을 2018.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8. 11. 14.경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73,686,000원 상당의 주차관제 시스템 및 CCTV 설치 공사는 도급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단위: 원)

전기공사	598,571,000	598,571,000	
통신공사	159,093,800	85,407,800	-73,686,000
소방공사	142,335,200	142,335,200	
합계	900,000,000	826,314,000	

마. 아울러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공사대금 합계 46,580,000원 상당의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항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단위: 원)

1	원격검침 시스템	20,000,000
2	가설전기	12,000,000
3	패널 추가제작	7,000,000
4	콘센트 색 변경	3,000,000
5	수변전 내부케이블	2,282,050
6	옥상 피뢰침	2,300,000
합계	46,582,050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증액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8. 11. 2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11. 28.경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였고, 2018. 11. 30.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총액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이미 건축허가도면에 기재된 것으로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9. 1. 7.경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이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4,558,263원(=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689,230,3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54,672,037원), 추가공사대금 60,884,689원(= ① 원격검침 시스템 공사대금 12,700,000원 + ② 가설전기 공사대금 12,000,000원 + ③ 패널 추가제작

공사대금 7,000,000원 + ④ 콘센트색 변경 공사대금 1,200,000원 + ⑤ 수변전 내부 케이블 공사대금 2,282,000원 + ⑥ 피뢰침 공사대금 2,300,000원 + ⑦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23,402,689원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약 8개월 연장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98,175,740원 상당의 관리비(간접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34,558,263원, 추가공사대금 60,884,689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98,175,740원의 합계 212,980,561원[= (34,558,263원 + 60,884,689원 + 98,175,74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은 '2018. 8. 31.'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2019. 1. 7.을 기준으로 1개월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작업기간을 거친 2019. 4. 8.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으로 211,240,844원(= 총 공사대금 960,185,655원 × 220일 ×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로 계약이 중도에서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65407 판결 등 참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I(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기성 부분의 공사비는 전기공사 522,088,100원, 통신공사 29,762,000원, 소방공사 98,950,814원을 합한 650,800,914원이고,2)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전기공사 55,454,900원, 통신공사 6,644,100원, 소방공사 74,984,700원을 합한 137,083,7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8. 11. 24.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2.60% [= 650,800,914원 ÷ (650,800,914원 + 137,083,700원)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기성고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682,535,364원(= 826,314,000원 × 0.826)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654,672,03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7,863,327원(= 682,535,364원 - 654,672,037원)이 된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추가공사비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총 46,582,050원을 증액하여 주기로 한 점, ②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비는 원격검침의 경우 12,700,000원, 가설전기의 경우 12,000,000원, 패널 추가제작의 경우 7,000,000원, 콘센트 색 변경의 경우 1,200,000원, 수변전 내부케이블의 경우 2,280,000원, 피뢰침의 경우 2,300,000원인 점, ③ 위와 같은 감정인 H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총 37,482,000원(= 12,700,000원 + 12,000,000원 + 7,000,000원 + 1,200,000원 + 2,282,000원 + 2,3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외에도 설계변경으로 추가 시공한 내역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발전기 급기덕트 18,150,000원, 주차장 급배기 및 유인휠 조작위치 조정 5,252,689원을 합한 23,402,689원이다(감정서 제38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발전기 급기덕트의 경우 이 사건 공사의 당초 허가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 공사비는 추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0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역시 발전기 급기덕트 설치가 당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다만 기존에 원고가 설치한 급기덕트를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이나 감리인 주식회사 K의 실정보고(갑 제10호증)상 '댐퍼, 발전기 급기: 수정 시공'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발전기 급기덕트를 설치한 장소가 어디이고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전기 급기덕트 추가 설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원고의 추가공사비는 주차장 급배기 및 유인휠 조작위치 조정에 따른 5,252,689원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건물외관공사를 담당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건물외관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관리비(간접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은 피고들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비를 증액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8. 피고 B에게 피고들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으로 인해 2차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3차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관리비를 지급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사실, 하도급업체들 중 석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다른 하도급업체들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서 제3조에서는 '본 변경계약은 근로자재해보상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재해보상보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적어도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L은 2018. 5. 3.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증액은 계약서에 준하여 발주처 부담은 어려운 내용'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고, 원고는 2018. 11. 28. 피고 B에게 'E에서는 2018. 9.에도 관리비 증액 없이 무상으로 공기 연장 및 계약서 연장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위 요청사항을 수용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는바 관리비 증액을 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원고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거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57,817원(= 27,863,327원 + 37,482,000원 + 5,252,689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지체상금의 시기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인 '2018. 8. 31.'의 다음 날인 '2018. 9. 1.'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서 제3조에 '본 변경계약이 근로자재해보상보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작성'된 것이라고 적혀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기간은 '2018. 8. 31.'로 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의 시기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인 '2018. 10. 31.' 다음 날인 '2018. 11.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체상금의 종기 피고들은, 지체상금의 종기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2019. 1. 7.'을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1개월의 준비기간과 60일의 공사기간을 거친 '2019. 4. 8.'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은 '2018. 11. 1.'이며 준비기간 및 공사기간은 실제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 등이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 준비기간 11일, 공사기간 47일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8. 12. 28.'이라고 주장한다.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감정인 N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11.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감정인 N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비교적 소규모의 현장이어서 원고가 철수하고 1개월간 후속공사를 준비하고 60일간

공사하여 2019. 2. 25.경이면 잔여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9. 1. 7.자 해지통지는 연말 연초의 분위기상 통지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은 '2018. 11. 24.'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2018. 11.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들이 M 등과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 2. 25.'이어서, 원고의 주장대로 잔여공사 준비기간을 11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잔여공사 기간이 60일보다 짧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인 N는 잔여 공사가 '짧은 기간에 걸쳐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해서 돌관작업의 성격으로 1인 250,000원으로 견적된 265공수로 계약되었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8. 11. 24.'부터 90일이 지난 '2019. 2. 2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2018. 11. 1.부터 2019. 2. 22.까지의 지체일수 114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103,619,775원[= 계약금액 908,945,400(= 826,314,000원 × 1.1) × 지체상금률 1/1000 × 114일, 원 미만 버림]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관리비를 증액해주지 아니하고 기성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피고들이 추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관리비 등의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 중에 분할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 이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들이 기성금 미지급 당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일부 대금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한 것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지체상금의 감액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지체의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까지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의 요청으로 원고가 추가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준공기한인 '2018. 10. 31.'이 지난 '2018. 11. 14.'경에야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 공사금액,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을 위에서 인정한 지체상금의 80%인 82,895,820원(= 103,619,775원 × 0.8)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82,89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1) 원고가 이 사건 2024.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20,402,689원'은 '23,402,689원'의 오키로 보인다.

2) 감정인 H이 산출한 원고 기성고 689,230,300원은 단순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서 피고의 잔여공사 집행비용을 제하여 산출한 것이다.